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구·부표 자유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부과 대상인 어구·부표의 범위를 정하고, 자연재난으로 어구·부표를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구·부표를 반환하지 않아도 어구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를 종전에는 ‘지명’으로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위도 좌표’로 표시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17. ~ 5. 29., 10. 11. ~ 11. 20.) 결

과, 특기할 사항 없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 형망선”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
구를 사용할 것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 관련 외국 법령에서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산물에 대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에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 또는 부표의 범위) ① 법 제81

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표”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제49조의3(어구 또는 부표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 또는 부표를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는 어구 또는 부표를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아 어구 또는 부표의 반환 없이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구 또는 부표를 구입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9조의5(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 또는 부표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업에 관한 업무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제78조 중 “법 제1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란 중 “양식장형망선”을 각각 “마을어장 형망선”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호 중 “양식장형망선”을 각각 “마을어장 형망선”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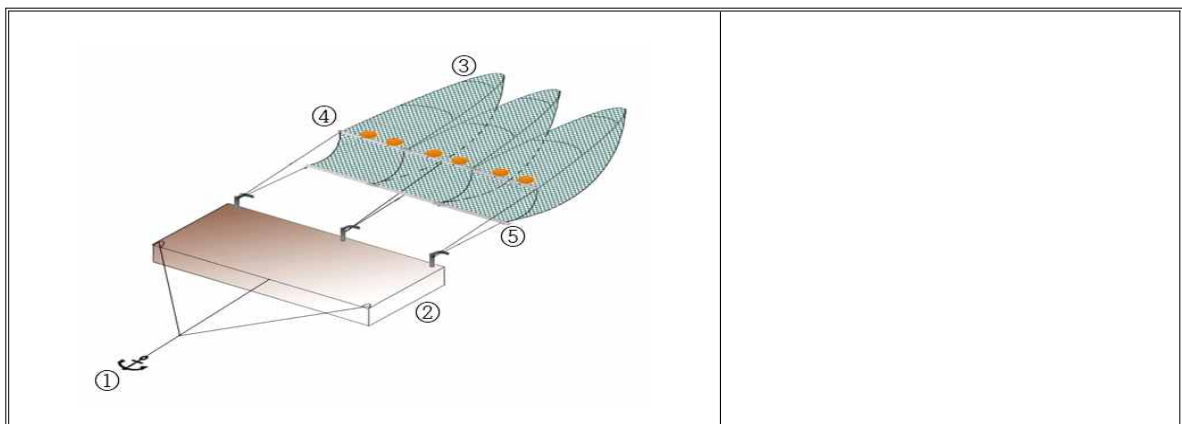
별표 2 제4호카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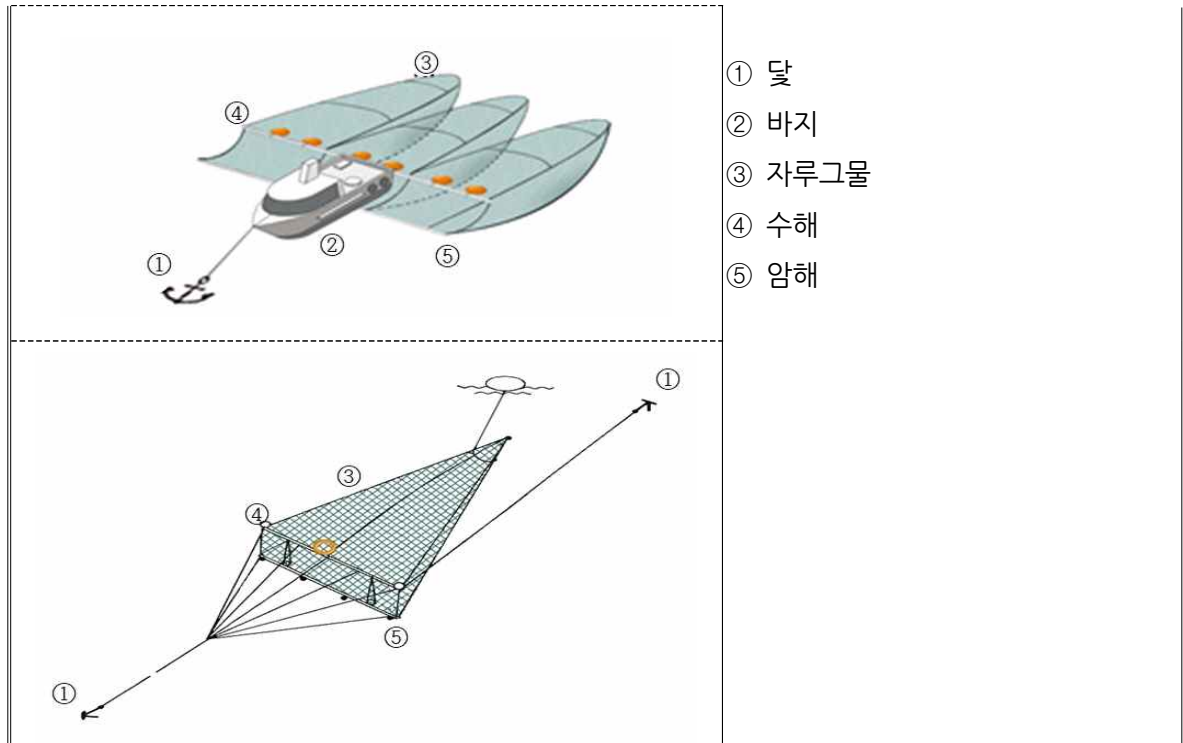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이 경우 바지는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이 없는 배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별표 2 제4호 부도 카-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카-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별표 5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연해 및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는 북위 34도 56분 50.30초 동경 127도 50분 47.92초부터 북위 34도 56분 22.96초 동경 127도 49분 52.37초를 거쳐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와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및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를 거쳐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에 이르는 선과 북위 34도 43분 18.27초 동경 127도 53분 27.44초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

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를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에서 허가 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 척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란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 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 1)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
- 2)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
- 3)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 4)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
- 5) 북위 34도 54분 10.69초 동경 127도 49분 32.66초

나. 북위 34도 43분 09.61초 동경 127도 50분 18.44초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로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에 이르는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

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별표 5 부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별표 7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1) 근해장어통발어업 2) 근해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대게의 경우는 연중으로 한다.	주10)의 해역
----	--------------------------	---------------------	---	----------

	대게포획금지, 대게류·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3) 근해문어단지어업	조업금지	연중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주위 마을어업 및 협동양 식어업 구역 이내의 해역

별표 7 주1)부터 주6)까지, 주8), 주9) 및 주12)부터 주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주15)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역”을 “해역(부도 3 참조)”로 하며, 같은 표 주17) 중 카목을 차목으로 한다.

주1) 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별도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로 한정한다)

- 1) 북위 40도 27분 16.39초 동경 129도 09분 18.87초
- 2) 북위 39도 48분 58.84초 동경 128도 27분 02.28초
- 3) 북위 39도 21분 52.82초 동경 128도 03분 59.58초
- 4) 북위 39도 17분 42.69초 동경 127도 33분 33.02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12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 1) 북위 39도 02분 09.47초 동경 128도 06분 47.00초
- 2) 북위 38도 41분 11.90초 동경 128도 25분 21.76초
- 3) 북위 38도 27분 00.20초 동경 128도 32분 58.40초

- 4) 북위 38도 10분 51.79초 동경 128도 40분 34.36초
- 5) 북위 38도 00분 49.88초 동경 128도 49분 05.38초
- 6) 북위 37도 40분 26.16초 동경 129도 08분 22.01초
- 7) 북위 37도 03분 31.06초 동경 129도 38분 07.50초
- 8) 북위 36도 46분 03.82초 동경 129도 29분 58.13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5월로 한정한다)

- 1) 북위 39도 48분 12.06초 동경 124도 11분 12.29초
- 2) 북위 39도 46분 38.93초 동경 123도 54분 29.98초
- 3) 북위 38도 23분 01.47초 동경 124도 34분 50.98초
- 4) 북위 38도 11분 19.97초 동경 124도 45분 49.77초

주2) 북위 38도 00분 09.86초 동경 125도 49분 52.80초, 북위 34도 00분 11.50초 동경 125도 49분 52.90초, 북위 34도 00분 11.54초 동경 127도 59분 52.23초, 북위 34도 30분 11.34초 동경 127도 59분 52.21초, 북위 34도 30분 11.36초 동경 128도 59분 51.90초, 북위 35도 38분 55.10초 동경 129도 34분 20.92초, 북위 36도 04분 39.45초 동경 129도 41분 26.94초, 북위 37도 03분 37.71초 동경 129도 33분 03.44초, 북위 37도 14분 06.39초 동경 129도 28분 41.81초, 북위 37도 40분 23.47초 동경 129도 10분 48.48초, 북위 38도 26분 52.66초 동경 128도 35분 36.41초와 북위 38도 41분 14.63초 동경 128도 21분 31.94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라말 이북에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말 이남까지의 해역 중 북

위 35도 59분 29.73초 동경 129도 37분 44.64초, 북위 36도 04분 39.45초 동경 129도 37분 47.89초, 북위 36도 13분 23.87초 동경 129도 33분 02.30초, 북위 36도 30분 26.85초 동경 129도 31분 59.83초, 북위 37도 03분 39.27초 동경 129도 31분 50.65초, 북위 37도 14분 09.91초 동경 129도 27분 28.86초, 북위 37도 40분 23.47초 동경 129도 09분 37.09초와 북위 38도 26분 54.65초 동경 128도 33분 08.00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밖의 해역에서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4도 40분 50.30초 동경 128도 34분 43.47초

나. 북위 34도 23분 39.76초 동경 127도 49분 11.33초

다. 북위 33도 57분 52.83초 동경 127도 20분 25.54초

라. 북위 34도 05분 52.80초 동경 126도 36분 08.70초

주4)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제1호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6도 06분 38.30초 동경 129도 26분 22.99초

2) 북위 36도 05분 06.28초 동경 129도 32분 50.36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 59분 29.63초 동경 129도 34분 05.54초

2) 북위 35도 51분 12.35초 동경 129도 31분 32.91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5도 39분 04.22초 동경 129도 27분 04.06초
- 2) 북위 35도 38분 51.36초 동경 129도 28분 21.94초
- 3) 북위 35도 29분 10.31초 동경 129도 27분 48.32초
- 4) 북위 35도 21분 11.21초 동경 129도 22분 59.49초
- 5) 북위 35도 10분 53.70초 동경 129도 13분 49.21초
- 6) 북위 35도 02분 20.04초 동경 129도 06분 24.37초
- 7) 북위 34도 51분 54.45초 동경 128도 47분 02.99초
- 8) 북위 34도 47분 12.12초 동경 128도 45분 36.17초
- 9) 북위 34도 42분 44.26초 동경 128도 41분 26.29초
- 10) 북위 34도 40분 54.36초 동경 128도 37분 13.15초
- 11) 북위 34도 40분 50.30초 동경 128도 34분 43.47초
- 12) 북위 34도 41분 34.23초 동경 128도 27분 25.94초
- 13) 북위 34도 41분 37.59초 동경 128도 23분 50.15초
- 14) 북위 34도 44분 44.48초 동경 128도 18분 10.59초
- 15) 북위 34도 42분 40.76초 동경 128도 10분 31.23초
- 16) 북위 34도 39분 46.65초, 동경 128도 02분 44.04초
- 17) 북위 34도 42분 14.11초 동경 127도 53분 26.09초
- 18) 북위 34도 37분 36.42초 동경 127도 51분 15.99초
- 19) 북위 34도 24분 02.47초 동경 127도 47분 04.20초
- 20) 북위 34도 12분 44.14초 동경 127도 15분 26.78초

- 21) 북위 34도 08분 48.32초 동경 126도 54분 00.00초
- 22) 북위 34도 05분 01.96초 동경 126도 40분 12.78초
- 23) 북위 34도 05분 52.80초 동경 126도 36분 08.70초
- 24) 북위 34도 07분 19.07초 동경 126도 30분 43.10초
- 25) 북위 34도 13분 22.96초 동경 126도 25분 06.59초
- 26) 북위 34도 18분 42.20초 동경 126도 05분 16.10초
- 27) 북위 34도 25분 07.09초 동경 126도 05분 21.33초

라.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35분 19.76초 동경 126도 14분 59.45초
- 2) 북위 34도 40분 45.54초 동경 126도 15분 18.81초

마.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04분 10.64초 동경 127도 16분 21.12초
- 2) 북위 34도 02분 11.97초 동경 127도 15분 35.82초
- 3) 북위 34도 00분 07.41초 동경 127도 16분 43.46초
- 4) 북위 34도 02분 22.60초 동경 127도 21분 15.05초
- 5) 북위 34도 04분 23.88초 동경 127도 20분 11.15초
- 6) 북위 34도 04분 53.18초 동경 127도 17분 34.56초
- 7) 북위 34도 04분 10.64초 동경 127도 16분 21.12초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14분 07.54초 동경 126도 53분 21.37초
- 2) 북위 34도 13분 08.91초 동경 126도 55분 44.16초

- 3) 북위 34도 11분 20.39초 동경 126도 57분 06.92초
- 4) 북위 34도 10분 38.80초 동경 126도 56분 47.26초
- 5) 북위 34도 08분 11.55초 동경 126도 50분 32.62초
- 6) 북위 34도 12분 44.65초 동경 126도 49분 30.95초
- 7) 북위 34도 14분 07.54초 동경 126도 53분 21.37초

사.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16분 08.14초 동경 126도 36분 45.06초
- 2) 북위 34도 10분 52.74초 동경 126도 42분 25.01초
- 3) 북위 34도 08분 54.72초 동경 126도 42분 17.71초
- 4) 북위 34도 06분 01.99초 동경 126도 40분 41.16초
- 5) 북위 34도 04분 47.89초 동경 126도 36분 09.00초
- 6) 북위 34도 06분 29.15초 동경 126도 29분 53.23초
- 7) 북위 34도 16분 01.40초 동경 126도 33분 47.38초
- 8) 북위 34도 16분 08.14초 동경 126도 36분 45.06초

아.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3도 59분 06.56초 동경 126도 15분 00.93초
- 2) 북위 33도 58분 50.32초 동경 126도 21분 05.28초
- 3) 북위 33도 56분 56.83초 동경 126도 21분 52.61초
- 4) 북위 33도 54분 53.81초 동경 126도 19분 37.63초
- 5) 북위 33도 59분 06.56초 동경 126도 15분 00.93초

주5)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금오도, 남면 안도, 남면 연도 및 완도군 청

산면 청산도의 해안선으로부터 550미터 선 안의 해역

주6) 북위 34도 59분 19.02초 동경 128도 49분 42.30초와 북위 34도 53분 43.48초 동경 128도 45분 06.82초를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53분 22.50초 동경 128도 28분 32.43초 및 북위 34도 53분 06.80초 동경 128도 28분 40.60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8)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부도 1 제2호 참조)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6도 06분 38.30초 동경 129도 26분 22.99초
- 2) 북위 36도 05분 06.28초 동경 129도 32분 50.36초

나.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5도 59분 29.63초 동경 129도 34분 05.54초
- 2) 북위 35도 51분 12.35초 동경 129도 31분 32.91초

다.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5도 39분 04.22초 동경 129도 27분 04.06초
- 2) 북위 35도 38분 51.36초 동경 129도 28분 21.94초
- 3) 북위 35도 29분 10.31초 동경 129도 27분 48.32초
- 4) 북위 35도 21분 11.21초 동경 129도 22분 59.49초
- 5) 북위 35도 10분 52.97초 동경 129도 14분 28.70초
- 6) 북위 35도 01분 36.28초 동경 129도 06분 09.92초
- 7) 북위 34도 58분 41.68초 동경 128도 59분 19.23초

- 8) 북위 34도 53분 42.06초 동경 128도 47분 43.97초
- 9) 북위 34도 47분 12.12초 동경 128도 45분 36.17초
- 10) 북위 34도 42분 44.26초 동경 128도 41분 26.29초
- 11) 북위 34도 40분 54.36초 동경 128도 37분 13.15초
- 12) 북위 34도 40분 50.30초 동경 128도 34분 43.47초
- 13) 북위 34도 41분 34.23초 동경 128도 27분 25.94초
- 14) 북위 34도 41분 37.59초 동경 128도 23분 50.15초
- 15) 북위 34도 44분 44.48초 동경 128도 18분 10.59초
- 16) 북위 34도 42분 40.76초 동경 128도 10분 31.23초
- 17) 북위 34도 39분 46.65초 동경 128도 02분 44.04초
- 18) 북위 34도 42분 14.11초 동경 127도 53분 26.09초
- 19) 북위 34도 37분 36.42초 동경 127도 51분 15.99초
- 20) 북위 34도 31분 52.23초 동경 127도 50분 31.33초
- 21) 북위 34도 23분 39.76초 동경 127도 49분 11.33초
- 22) 북위 34도 24분 03.98초 동경 127도 46분 17.71초
- 23) 북위 34도 29분 25.93초 동경 127도 44분 08.71초
- 24) 북위 34도 32분 21.21초 동경 127도 38분 22.27초
- 25) 북위 34도 34분 25.25초 동경 127도 29분 13.34초

라.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1) 북위 34도 31분 07.80초 동경 127도 10분 14.07초
- 2) 북위 34도 26분 43.54초 동경 126도 57분 57.49초

3) 북위 34도 24분 15.40초 동경 126도 58분 04.52초

4) 북위 34도 24분 15.68초 동경 126도 57분 04.19초

마. 북위 34도 21분 12.07초 동경 126도 54분 30.30초와 북위 34도 20분 32.26초 동경 126도 53분 56.87초를 연결한 선, 북위 34도 18분 55.34초 동경 126도 47분 38.20초와 북위 34도 17분 15.62초 동경 126도 46분 39.59초를 연결한 선 및 북위 34도 23분 11.21초 동경 126도 38분 35.73초와 북위 34도 23분 14.89초 동경 126도 38분 13.76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바.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 04분 16.23초 동경 127도 16분 02.82초

2) 북위 34도 02분 16.01초 동경 127도 14분 57.14초

3) 북위 33도 58분 58.74초 동경 127도 15분 20.59초

4) 북위 33도 57분 52.83초 동경 127도 20분 25.54초

5) 북위 34도 02분 31.34초 동경 127도 23분 14.40초

6) 북위 34도 04분 34.91초 동경 127도 20분 26.45초

7) 북위 34도 04분 36.95초 동경 127도 17분 34.51초

8) 북위 34도 04분 16.23초 동경 127도 16분 02.82초

주9) 북위 34도 45분 14.58초 동경 127도 39분 41.38초, 북위 34도 44분 26.13초 동경 127도 39분 48.15초, 북위 34도 42분 41.26초 동경 127도 42분 03.74초, 북위 34도 41분 00.32초 동경 127도 38분 21.35초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과 북위 34도 03분 46.49초 동경 127도

18분 21.56초와 북위 34도 03분 48.55초 동경 127도 17분 35.12초를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00분 19.18초 동경 127도 19분 29.65초와 북
위 34도 01분 59.90초 동경 127도 19분 53.48초를 연결한 선 안의 해
역

주12)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4도 44분 21.48초 동경 127도 33분 53.43초

나. 북위 34도 40분 58.22초 동경 127도 26분 43.88초

주1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4도 39분 05.89초 동경 127도 11분 47.23초

나. 북위 34도 41분 31.68초 동경 127도 10분 31.29초

주14)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 35도 15분 02.07초 동경 126도 18분 29.78초

나. 북위 35도 18분 01.04초 동경 126도 08분 28.59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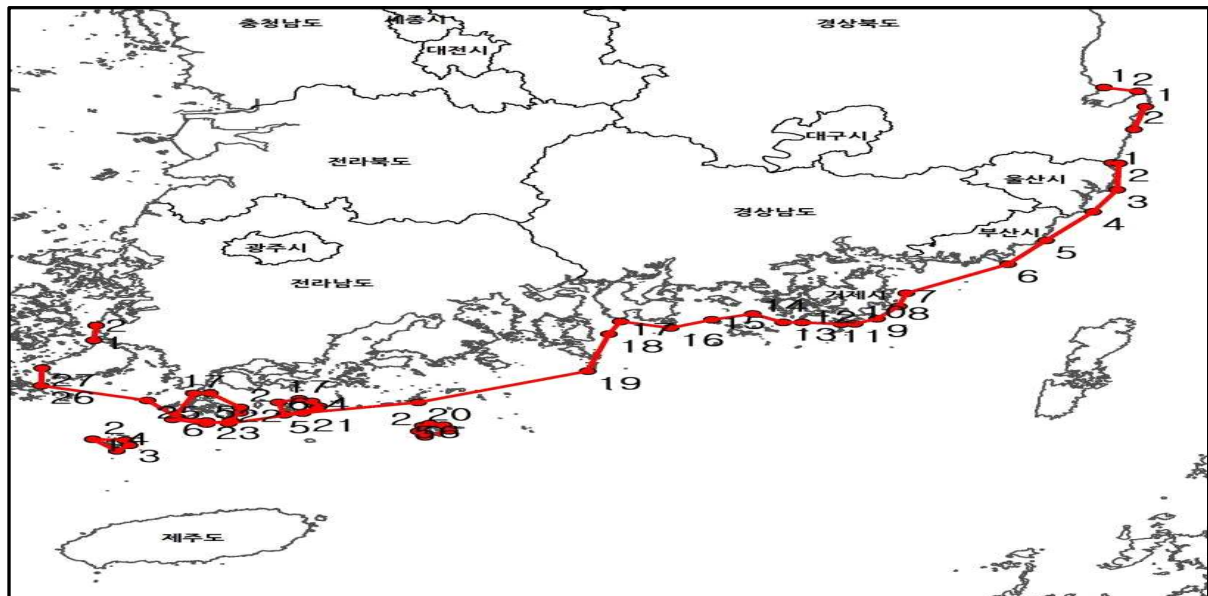
다. 북위 35도 34분 14.87초 동경 126도 15분 44.35초

라. 북위 35도 23분 00.39초 동경 126도 23분 53.12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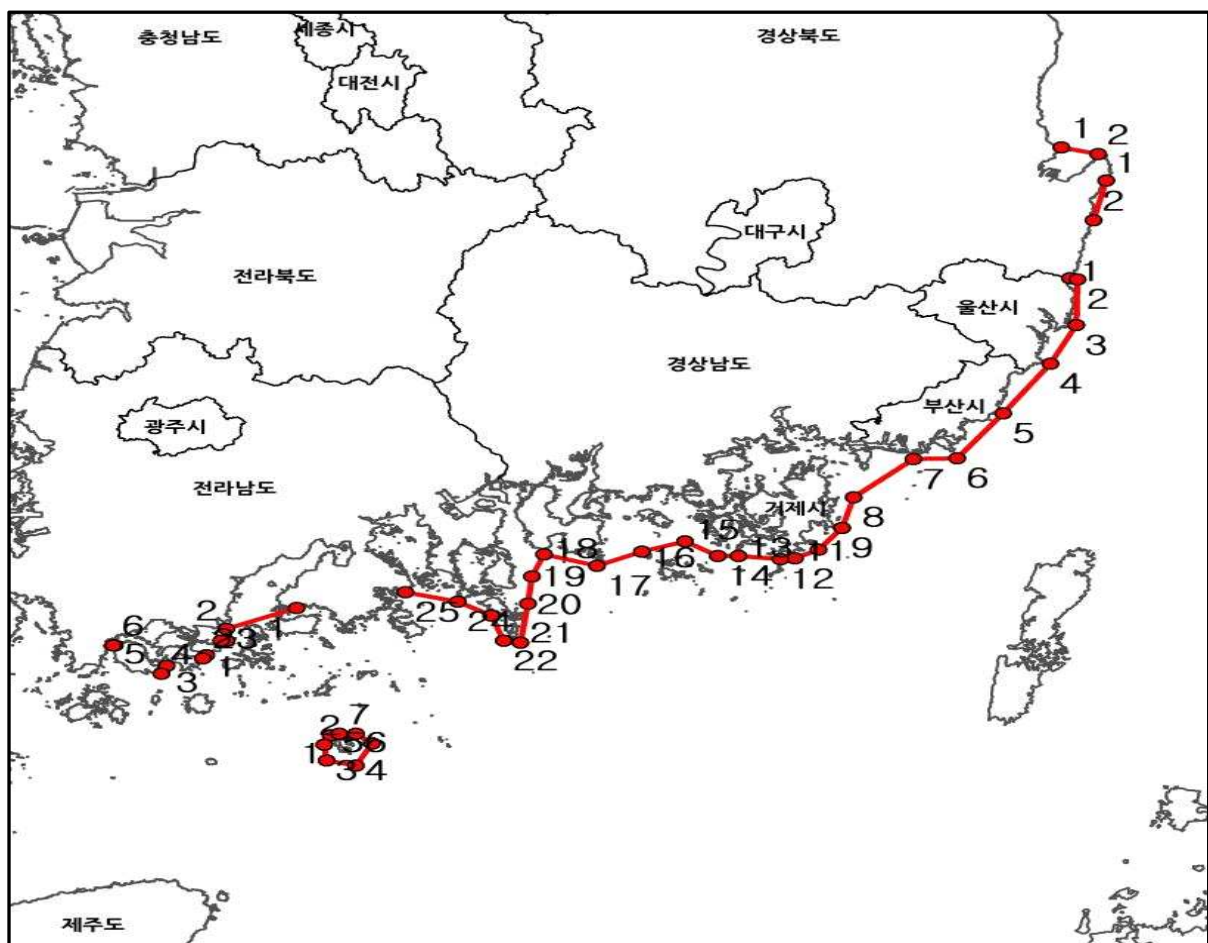
별표 7 부도 1부터 부도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도 1]

1. 대형선망어업 및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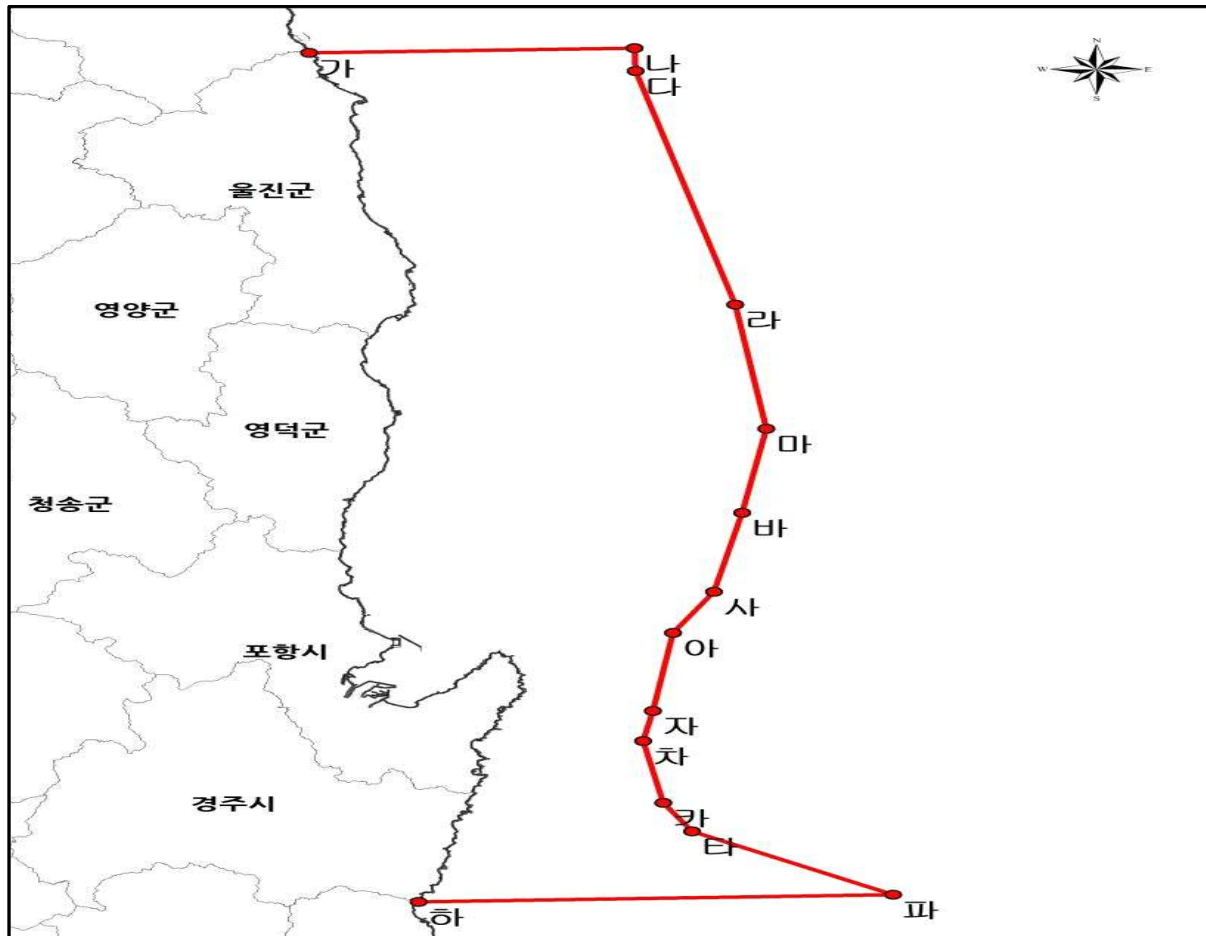


2. 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멸치 포획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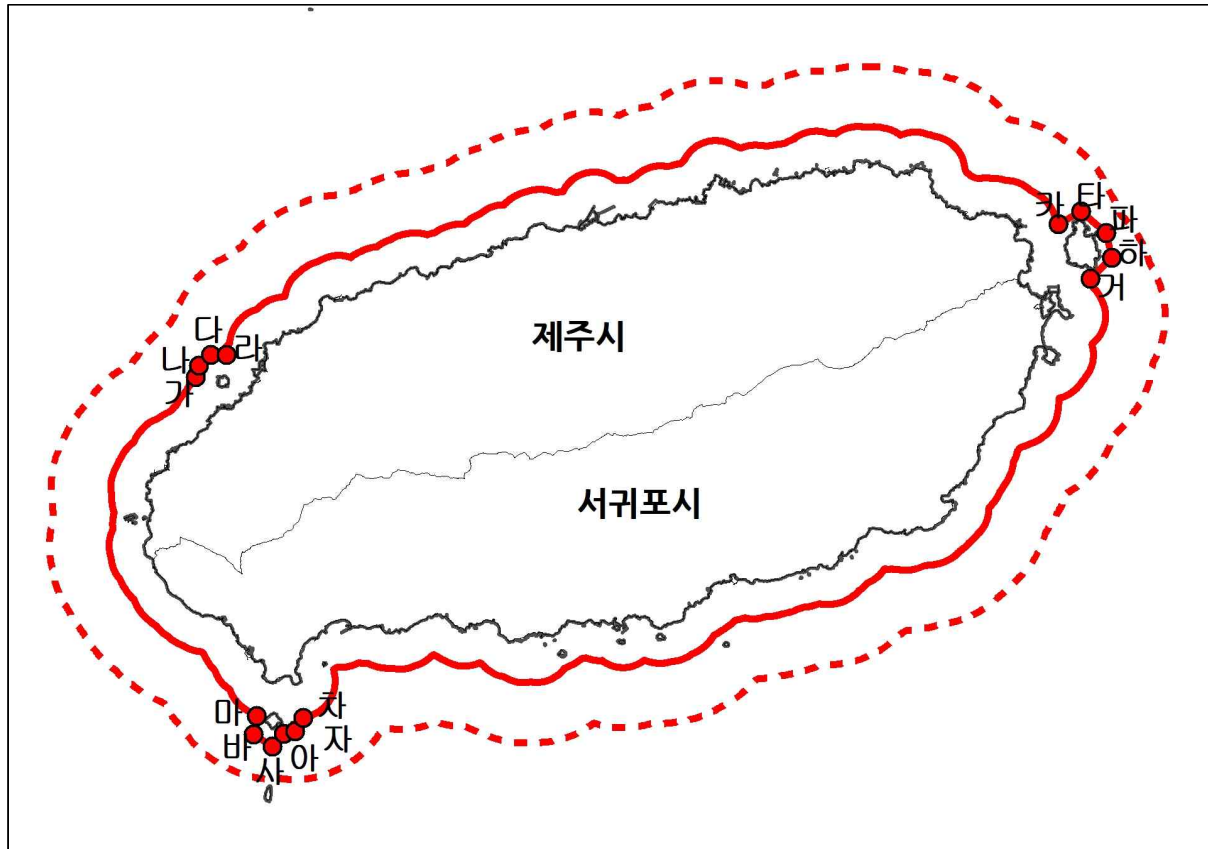
[부도 2]

근해장어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및 연안통발어업의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 · 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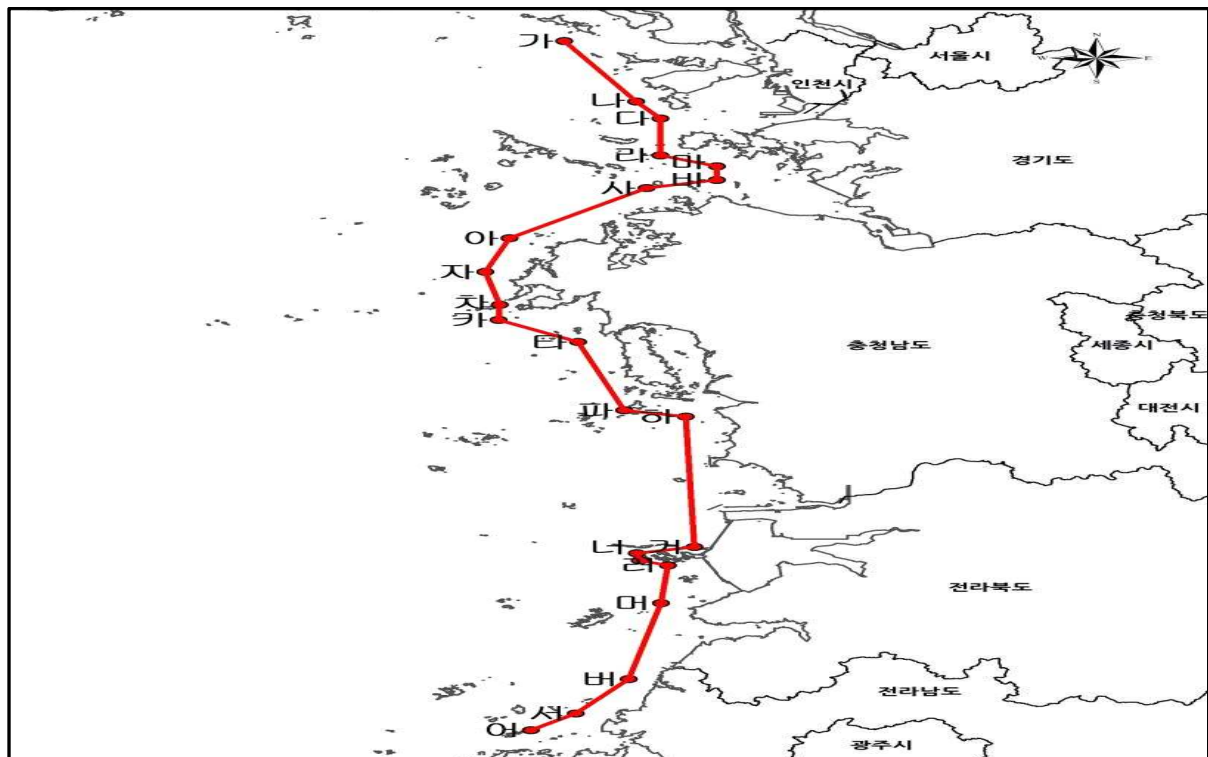


[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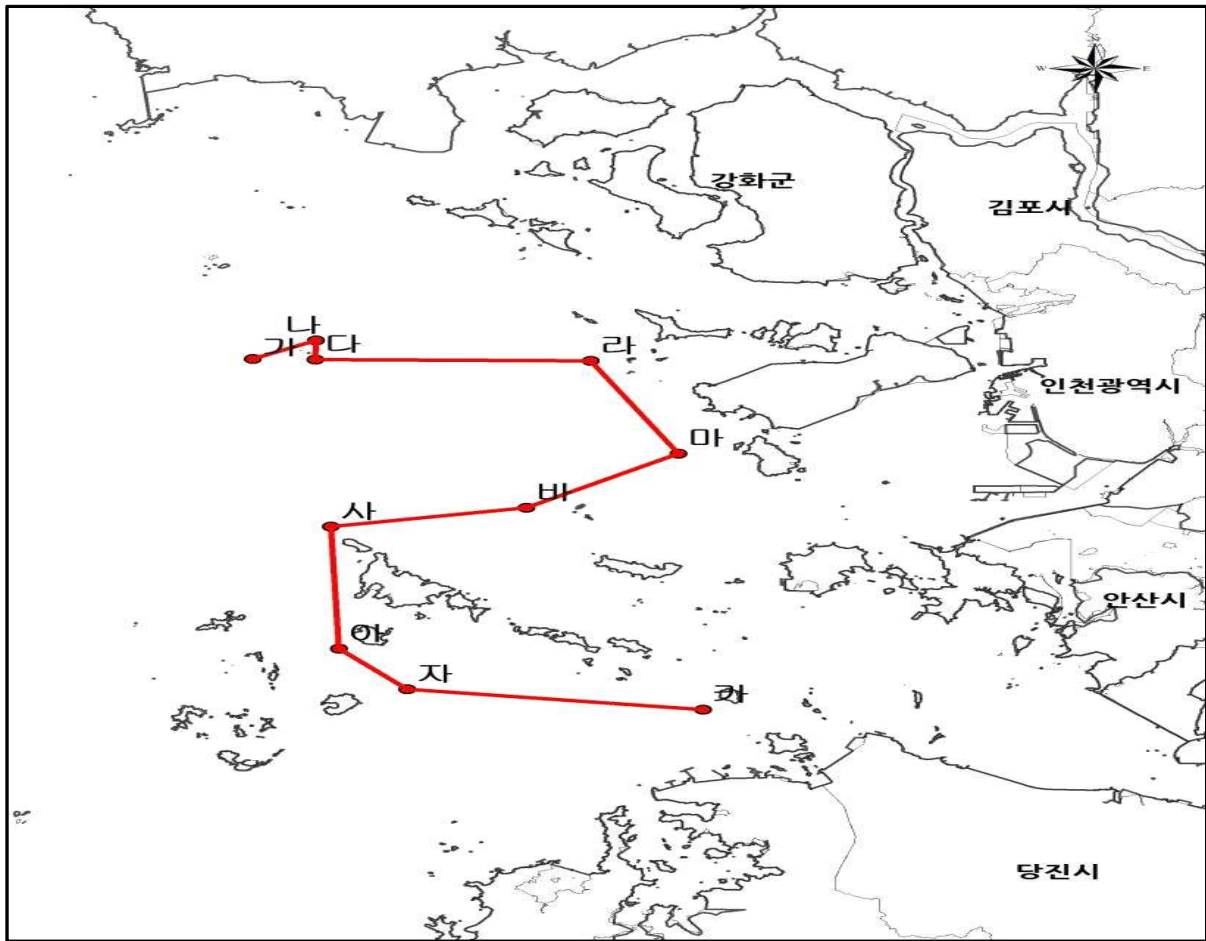
구분	범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 및 주15)의 해역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주위 7천4백미터 이내 해역	



[부도 4]



[부도 5]



별표 12 제2호퍼목 및 허목을 각각 고목 및 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퍼목 및 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2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허.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2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장형망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양식장형망선은 제1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어장 형망선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생 략)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u>양식장형망선</u> 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제14조(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마을어장 형망선</u> ----- ----- ----- ----- ----- -----.
제26조(신고어업)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이란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제26조(신고어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u>

④ (생 략)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수산 관련 외국 법령에서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산물에 대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 또는 부표의 범위) ①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어구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
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
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장어통발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표”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장
부표를 말한다.

제49조의3(어구 또는 부표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
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
여 어구 또는 부표를 분실한 경
우를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
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
증금관리센터”라 한다)는 어구
또는 부표를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
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아 어구

<신 설>

<신 설>

또는 부표의 반환 없이 어구보
증금을 해당 어구 또는 부표를
구입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49조의4(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어구보증금
관리센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
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
수산자원공단의 정관으로 정한
다.

제49조의5(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
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
행하는 어구 또는 부표의 회수
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
산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
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

이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21. ~ 24. (생략)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11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u>	----- -- <u>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u> ----- ----- ----- ----- ----- -----. 1. ~ 20. (현행과 같음) <u>20의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u> <u>20의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u> <u>20의4.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u> 21. ~ 24.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2